

13. 취·창업지원센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기관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2018.01.31.자구수정)(2021.6.22.개정)

제2조(목적) 센터는 학생의 진로개발과 취·창업 활동지원 및 활성화 사업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2.03. 자구수정)

제3조(구성)

- ① <삭제> (2018.1.31.항 삭제)
- ②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삭제> (2018.1.31. 항 추가)(2019.2.8.개정)
- 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임명에 관한 사항은 관련 인사규정에 따른다.(2018.1.31.자구수정)

제4조(사업) 센터는 학교내 취·창업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6.2.03. 항목 변경)(2018.1.31. 자구수정)

1. 학생의 진로개발 및 취·창업지원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취·창업 관련 진로 및 창업상담
3. 취·창업 관련 정보 관리 및 제공
4. 취·창업 및 부업 추천
5. 평생경력개발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도
6. 취·창업률 자료조사 및 통계관리
7. K-Planner 취·창업에 관한 업무관리(2018.1.31. 호 추가)
8. 가상복지관(아미쿠스)의 취·창업관련 연계업무 관리(2018.1.31.호 추가)
9. 사회봉사센터와 취·창업관련 연계업무(2018.1.31. 호 추가)
10. 학생생활상담센터와 취창업관련 연계업무(2018.1.31 호 추가)(2019.4.24. 개정)
11.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취·창업관련 연계업무(2018.1.31.호 추가)
12. 기타 취·창업지원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기획관리처장, 교무입학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018.1.31. 자구수정)(2019.2.8.개정)
- ② <삭제> (2019.2.8.개정)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2019.4.24. 호 추가)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취·창업지원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 및 개선 환류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소집 및 의결)

- ① 위원장은 필요시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